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525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최석광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택 담당변호사 박상길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판누락에 따른 판결

원고는 2020. 6. 3.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이 법원이 2020. 9. 8. 선고한 판결에는 이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누락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6. C으로부터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 2017. 4. 16.”로 정한 ‘차용금 증서’(갑 제5호증)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7. C을 상대로 위 차용금 증서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차전2046호)을 신청하였고, 2018. 6. 12. ‘C은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 5. 23.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4.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8.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청에 대한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원금 12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C과 피고가 모녀관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는 후인 2018.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1,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인 1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